

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심사보고

의안 번호	3106
----------	------

2022. 03. 30.
도시계획관리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2. 3. 10. 정재웅 의원 발의
2. 회부일자: 2022. 3. 16.
3. 상정 및 의결일자
○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(2022. 3. 30. 상정·의결)

II. 제안설명 요지 (정재웅 의원)

1. 제안이유

- 방범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때 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의 경우 재난이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외부로 탈출하기 용이한 시설이어야 함을 명시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범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 재난 또는 화재 발생 시 외부로 탈출하기 용이하도록 제작된 시설에 한정함(안 제9조 제2항 신설).

Ⅲ. 검토보고 요지 (조정래 수석전문위원)

- 개정안은 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범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 재난 또는 화재 발생 시 외부로 탈출하기 용이하도록 제작된 시설에 한정하도록 하는 것임.
- 방범시설의 종류 중 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범시설은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범죄목표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시설로서 방범문, 방범창, 방범용 망창, 방범용 창살, 창호용 잠금장치 등이 있음. 이는 기본적으로 재난 및 화재가 발생할 경우 탈출이 용이하도록 제작되어야 하므로, ‘범죄 예방 인프라 강화사업’과 같이 서울시가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시설은 재난 및 화재 발생 시 외부로의 탈출이 용이하게 제작되어야 함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됨.

※ 방범시설 등의 종류

1.방범시설	(직접) 방범문, 방범창, 방범용 망창, 방범용 창살, 창호용 잠금장치, 경보장치 (간접) 조명, CCTV, 반사경, 범죄예방디자인 적용구간 안내 등 정보제공사인 등 ※ 출입차단 방범시설 : 방범문, 방범창, 방범용 망창, 방범용 창살, 창호용 잠금장치 등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범죄목표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시설
2. 기타	(디자인) 건물 재도색, 벽화, 전신주 디자인 등 (그 외) 형광물질 도포, 도로포장·미킹, 휴게소통 공간 등

※ 범죄예방 인프라 강화사업 (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)

- (대상지역) 범죄예방 강화구역* 등 강·절도, 성범죄 발생이 빈번한 지역,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 등
 - * 범죄예방 강화구역 : 각종 범죄발생 우려로 특별히 강화된 범죄예방대책 필요한 지역(지정권자: 서울경찰청장 및 경찰서장)
- (사업내용) 공모를 통해 경찰서에서 관리 중인 범죄예방 강화구역 등 취약 구역 선정(5~6개소), 구역 내 LED조명, 위치표지판, 비상벨 등 방범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, 범죄예방 인프라 단계적 강화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V. 토론요지 : 없음
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출석위원 전원 찬성)

VII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방범시설(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범시설의 설치에 한정한다)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방범시설은 재난 또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실내에서 외부로 탈출하기 용이하도록 제작된 방범시설이어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방법시설 등 설치 지원)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9조(방법시설 등 설치 지원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라 방법시설(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시설의 설치에 한정한다)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방법시설은 재난 또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실내에서 외부로 탈출하기 용이하도록 제작된 방법시설이어야 한다.</u></p>